

의안번호	2212060
의 퇴 인	김미애 의원
회 답 일	2025.11.07.
추계번호	25E433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%에서 9%로 인하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년 6,001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3조 5억원(연평균 6,00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(안 제129조)	-6,001	-6,001	-6,001	-6,001	-6,001	-30,005	-6,00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	○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%에서 9%로 인하	-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금융소득(이자 및 배당소득)이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는 ‘배당소득금액×원천징수세율 변화분’으로 추계
 - 배당소득금액은 ‘이자·배당소득 지급명세서(국세청 제공자료)’ 상 개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등을 활용해 추계
 - － 동 자료는 비과세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금액으로 구분된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¹⁾
-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도 원천징수세율 변화 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, ‘배당소득금액(원천징수세율 적용분)×원천징수세율 변화분’으로 추계
 -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①일반 산출세액 또는 ②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하므로,²⁾ 원천징수세율의 변화가 세액의 변화를 야기

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(「소득세법」 제62조) : 종합소득산출세액 = MAX(①, ②)

$$\begin{aligned} \text{① 일반 산출세액} &= \text{금융소득(2천만원)} \times \text{세율 } 14\% \\ &+ (\text{전체 과표금액}^* - 2\text{천만원}) \times \text{종합소득세율}(6\sim 45\%) \\ &\quad * 2\text{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및 금융소득 외 소득}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 \text{② 비교 산출세액} &= \text{금융소득금액} \times \text{세율 } 14\% \\ &+ (\text{과세표준 금액} - \text{금융소득금액}) \times \text{종합소득세율} \end{aligned}$$

- 종합소득 구간별로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을 산출하고, 이를 해당 구간의 대푯값으로 하여 ①일반 산출세액 또는 ②비교 산출세액 적용 여부를 판별함
 - － (①일반 산출세액 적용)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 중 배당소득이 1천만원인 것으로 가정하고, 1천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변화분을 반영함
 - － (②비교 산출세액 적용)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변화분을 반영함

1) 이자·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(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(1)]의 ‘⑯과세구분’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함

2)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세율이 분리과세 세율(14%)보다 낮거나 종합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세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, 개편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과세 구조를 동일하게 반영해 산출세액을 계산함

- 배당소득금액은 ‘종합소득 구간별 인원·금융소득(배당소득 포함) 등의 자료 (국세청 제공)’를 활용
 - 다만 이는 집계 시점 및 기준 등의 차이로, ‘이자·배당소득 지급명세서’ 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소득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□ 최근 배당소득금액이 추계기간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가정

□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세수효과

□ 2023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9.1조원 수준

[표 2] 개인 배당소득금액 신고 현황(귀속 기준)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	87,917	87,205	90,935

주: 1. 이자·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집계함

2. 비과세 및 종합과세기준금액(2천만원) 이하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 외의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

3.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2023년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변화를 반영 시 연간 소득세수는 4,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

- 현행 원천징수세율(14%) 반영 시 세액은 1조 2,731억원 수준
- 개정안의 원천징수세율(9%) 반영 시 세액은 8,184억원 수준

[표 3]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수효과 추정: 2023년 귀속 기준
(단위: 억원)

	배당소득금액	세액 추정		세수효과
		현행 (원천징수세율 14%)	개정안 (원천징수세율 9%)	
		A	B	B-A
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	90,935	12,731	8,184	-4,547

주: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

나.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세수효과

-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신고 자료로 추정한 결과, 현행 원천징수세율(14%) 적용 시 1인당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구간은 ②비교 산출세액 방식으로, 5천만원 초과 구간은 ①일반 산출세액 방식으로 결정되는 구조

[표 4]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인당 종합소득 산출세액
: 현행 원천징수세율(14%) 반영, 2023년 귀속

(단위: 백만원)

종합소득 규모별	1인당 평균 종합소득 과세표준 ¹⁾			1인당 종합소득 산출세액		
	전체	금융소득분 ²⁾	그 외 소득분 ³⁾	①일반	②비교	A=max(①,②)
2~3천만원	22	24	-2	2.9	3.4	3.4
3~4천만원	32	29	2	3.5	4.3	4.3
4~5천만원	41	33	7	4.6	5.1	5.1
5~6천만원	50	37	13	6.0	5.9	6.0
6~8천만원	63	41	22	8.0	7.8	8.0
8천만원~1억원	81	45	36	11.6	10.4	11.6
1~2억원	129	55	75	25.6	19.8	25.6
2~3억원	227	83	144	61.5	46.6	61.5
3~5억원	363	122	241	114.2	88.8	114.2
5~7억원	564	180	384	195.3	152.8	195.3
7~10억원	802	259	543	295.2	228.5	295.2
10억원 초과	2,751	1,358	1,393	1,165.8	750.9	1,165.8

주: 1) 소득 구간별 총 과세표준 금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

2) 금융소득 금액이 모두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

3) 결손액 등에 따라 0을 하회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, 산출세액 계산 시 0으로 반영함

□ 2023년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반영 시 연간 소득세수는 1,4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

○ 종합소득 구간별로, 원천징수세율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변화분을 반영함

－ (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) ②비교 산출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‘1인당 배당소득금액 전체×세율 변화분(14%→9%)’을 반영

－ (종합소득 5천만원 초과) ①일반 산출세액^(주1) 계산방식에 따라, ‘1인당 배당소득금액 (1천만원)×세율 변화분(14%→9%)’으로 산출하여 반영

(주1) 일반 산출세액 = 금융소득(2천만원)×원천징수세율

+ [금융소득(2천만원 초과분) + 그 외 소득]×종합소득세율(6~45%)

단,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(2천만원)은 이자소득(1천만원) 및 배당소득(1천만원)으로 안분해 계산함

[표 5]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 배당소득세 산출세액 감소 규모 추정: 2023년 귀속

(단위: 만명, 백만원)

종합소득 규모별	배당소득 신고 인원	전체 배당소득금액	1인당 평균 배당소득		원천징수세율 변화 시 산출세액 차이	
			원천징수세 율 적용대상	원천징수세 율 적용대상	1인당	전체
	C, 만명	D, 억원				
2~3천만원	2.8	2,351	8.5	8.5	-0.4	-118
3~4천만원	2.4	2,714	11.1	11.1	-0.6	-136
4~5천만원	2.2	2,794	13.0	13.0	-0.6	-140
5~6천만원	1.8	2,825	15.6	10.0	-0.5	-91
6~8천만원	2.9	5,314	18.6	10.0	-0.5	-143
8천만원~1억원	2.3	5,169	22.0	10.0	-0.5	-117
1~2억원	7.0	22,182	31.6	10.0	-0.5	-351
2~3억원	2.7	14,863	54.9	10.0	-0.5	-135
3~5억원	2.1	18,234	87.5	10.0	-0.5	-104
5~7억원	0.8	11,755	139.0	10.0	-0.5	-42
7~10억원	0.6	12,184	201.8	10.0	-0.5	-30
10억원 초과	0.9	116,796	1,246.4	10.0	-0.5	-47
합계	28.6	217,182	-	-		-1,454

주: 1.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구간은 비교 산출세액 방식으로 계산하고, 5천만원 초과 구간은 일반 산출세액 방식으로 계산함

다. 전체 세수효과

-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%에서 9%로 인하 시 소득세 수는 2026년 6,001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3조 5억원(연평균 6,00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연간 세수효과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(-4,547억원)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인 경우(-1,454억원)을 합산한 금액
 - 추계기간 배당소득 금액이 최근(2023년)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

[표 6]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시 세수효과: 2026~2030년(귀속 기준)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(안 제 129조)	-6,001	-6,001	-6,001	-6,001	-6,001	-30,005	-6,001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